

## 법정통번역 교육

정혜연  
(한국외대)

### 1. 들어가며

법정통번역은 통번역 중에서도 범위가 한정된 특수한 분야이다. 이러한 협소한 통번역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고 또 관련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선은 결과의 중요성 때문이다. 통역이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상황은 원고, 피고인의 인생향방을 결정할 수 있고, 사회정의실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수요의 꾸준한 증가이다. 1990년대 후반, 세계화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외국인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범죄의 양도 늘어나며, 궁극에는 외국인 민형사 재판의 수도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셋째, 이러한 수요증가와 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정통번역의 체계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표적 이민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예외가 되겠으나, 이민율이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유럽에서조차도 법정통번역 체계화는 아직 진행단계이다(GROTIUS, AGIS 등). 이와 비교해 보았

을 때, 2008년 첫 관련 프로젝트(한국외대)가 출범한 한국의 사정은 아직 초보 단계라 하겠다.

이러한 법정통번역 체계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제도적으로는 모든 과정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관련법 마련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내에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040호에 부족하나마 법정통번역사 고용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통번역 품질 개선의 실질적 첫걸음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법정통번역사 후보자가 마련되어 있어야 이들을 대상으로 인증자격을 결정하고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아직 국내법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 인증관련 사항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통번역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EU의 “형사재판 피고인 보호에 관한 녹색(Green Paper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2003)”에서 EU회원국 권고사항에 첫 번째로 교육문제를 언급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Hertog 2008:46).

본고는 **김진아 외(2009)**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전 연구에서 법정통번역 전반에 관한 사안을 다루었다면,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법정통번역 체계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교육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로 한다. 우선 통번역 교육 선행연구를 참조해 교육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현황과 해외사례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첫 장에서 선별된 교육설계 관련요소에 대해 구체적 교육설계안을 제시한다.

## 2. 교육설계에서 고려할 요소

하나의 교육체계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크게 범주화해보면 교육의 목적, 조건, 그리고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정의한 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내외적 제반조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반조건에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정혜연 2008:465-466). 통번역 커리큘럼을 연구한 프라이호프(Freihoff

1993)의 경우,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하며 바람직한 교육체계가 가져야 할 성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통번역교육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교육목적을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와의 연계성, 실현가능성, 목표 달성에의 안정성, 신속성, 경제성이 교육설계에서 중시되어야 할 '덕목'인데 이러한 교육설계의 성격은 정혜연(2008)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이 중 프라이호프(1993), 정혜연(2008)이 모두 지적한 교육의 목적은 개개의 관점(예: 수요자, 공급자의 관점)이나 추상성(예: 이론적, 실무적)에 따라 다층적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본고는 법정통번역 교육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려는 의도를 갖는 만큼, 교육의 목적 또한 수요공급자의 모두의 관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법정통번역의 목적을 실제 법정통번역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법정통번역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둘째, 정혜연(2008)의 제반조건의 문제는 프라이호프(1993)에서 사회와의 연계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와의 연계라 함은 교육과 관련된 현실을 고려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법정통번역과 관련된 제반조건을 법정통번역의 시장상황과 법정통번역사의 현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중 법정통번역사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이들이 법정통번역 교육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이를 법정통번역 교육에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의미에서 외적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세 번째인 방식의 문제는 법정통번역 교육의 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 프라이호프(1993)의 목표 달성에의 안정성, 경제성 문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교육목표를 현실화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실질적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교육주체, 교육연한, 학생, 교수자, 채용마련, 나아가 구체적 커리큘럼과 교안작성, 교재개발로 구체화해 살펴본다. 이들 요소는 모두 외적요소들을 파악한 이후, 이들 요소들이 교육에 반영될 때 어떠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본고에서는 이를 구체적 교육설계 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에서 내적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 외적요소 - 법정통번역 시장 현황, 법정통번역사 현황(직업, 성별, 연령, 교육유무, 외국인비율, 사용언어 분포, 법정통번역 교육에 대해 갖는 기대 등)
- 내적요소 - 교육주체(기관), 교육연한, 학생(국적, 전공언어, 입학자격), 교수자(전공), 커리큘럼, 구체적 강의교안, 교재개발, 자원(지원, 수강료) 등

### 3. 외적요소와 관련해 살펴본 국내 현황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적요소란 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사항들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정통번역 시장의 현황과 법정통번역사의 현황을 일컫는다. 이 장에서는 이 중 전자인 법정통번역 시장의 현황을 수요, 공급 상황으로 축소해 살펴보고, 후자인 법정통번역사의 현황은 크게 법정통번역사의 분포와 이들이 법정통번역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3.1. 법정통번역 수요

국내에서 법정통번역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외국인 범죄 및 재판 관련통계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2007)<sup>1)</sup>를 살펴보면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7년 8월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법정통번역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외국인 증가세가 아니라 외국인 증가세에 비해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약 4배(5,134명→23,351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 수가 약 2배 정도(491,324명→1,066,273명) 증가한 것을 고려해볼 때<sup>2)</sup>, 외국인 범죄율 증가는 외국인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 중 실제 재판에 이르는 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형사재판(1심)의 경우, 2002년 588건에서 2005년 2,301건으로 3년 사이에 4배

1)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2) 법무부 <http://www.moj.go.kr>

가까이 증가했고, 2007년 상반기에만 1,347명의 외국인이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국제결혼과 관련된 가정문제가 증가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형사재판에 비해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자료요청에 응한 일부 법원<sup>4)</sup>의 예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 민사재판 건수가 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통계에서는 외국인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비율이 2:3으로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못지않게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와 이러한 통계를 통해 얻고자 것은 단순히 법정통번역의 필요성이 아니라, 법정통번역사의 실제 수요, 나아가 이들이 투입될 분야(형사 및 민사소송의 종류)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외국인 재판 증가는 법정통번역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 수요는 언어 및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언어별 수요를 살펴볼 때 가장 수요가 많은 언어는 압도적으로 중국어(대만 포함)이고, 다음은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 러시아가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외국인 범죄자, 즉, 잠재적 피고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원고나 증인의 경우를 포함하면 이러한 분포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언어별 수요는 교육설계에 있어 언어별 교육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중국	미국	몽골	베트남	대만	일본	러시아	합계
범죄수	9,346	1,447	1,222	662	621	415	323	17,757

(표1) 국적별 외국인 범죄발생동향 (2007년) (단위: 건)

한편, 지역별 수요 차이 역시 법정통번역 교육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수요의 크기에 따라 해당 지역 법정통번역의 규모와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는 인천이며, 그 뒤를 안산, 부산, 서

3) 대법원 <http://www.scourt.go.kr>

4) 이하 재판 및 법정통번역사 관련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창원지법이 2008년 보내온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울, 대구가 있고 있다. 그 밖에 10위 내에 수원, 시흥, 성남, 용인, 울산이 있어 국내 외국인은 주로 경기, 경상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충청지역에는 대전(12위), 전라지역에는 광주(13위) 정도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에는 전체가 부천시(11위) 하나와 비슷한 수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며, 제주지역은 강원지역의 절반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어서 이들 지역은 경기, 경상지역과 수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거주 외국인 수와 외국인 재판수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지만, 통번역 수요와 관련해 두 변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정도까지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지역별 재판 건수를 보아도 외국인 수 6위인 수원이 120건(2008년 상반기), 16위인 창원이 64건(2008년 상반기)을 기록해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 재판이 열리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차를 감안할 때, 경기, 경상지역과 그 외 지역 법정통번역교육 설계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3.2 법정통번역사 공급

2009년 현재 법정통번역사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040호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에서 매년 한 차례 공고를 통해 모집되고 있다. 법정통번역사가 되고자 하는 이는 자신의 이력서 및 통번역인 명단 등재신청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각각 1부씩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들을 법정통번역사로 선정하면 이들은 통번역인 명단에 등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법정통번역사의 수는 164명(2008년 기준)이다. 그밖에 부산고등법원은 19명, 창원지방법원 38명의 통번역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는 선별적으로 수집된 만큼 법정통번역사 공급상황에 대한 전반적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창원지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거주 외국인 수나 재판수 대비 통번역사 확보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통계를 제외한 수치라고 하더라도<sup>5)</sup> 서울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치고는 법정통번역인 비율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5) 부산지역의 법원조직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처럼 공급상황이 지역별 법정통번역사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법정통번역에 대한 재판예규 제1040호가 법정통번역사 고용의 상당부분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6)</sup> 재판예규에서는 법정통번역인의 수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법원의 통번역 관련 행정담당자가 법원의 필요에 따라 통번역사 수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러한 공급상황에는 등재를 희망하는 통번역 후보자들의 수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즉, 해당 지역에 통번역 후보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특정 언어에 대해 통번역사를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의 여부도 해당 지역의 통번역사 공급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법정통번역과 관련해 공급이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관련 법규의 모호함, 각 법원 행정상의 차이(수요 인식상의 차이, 통번역사 모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등), 통번역사 후보 확보상의 어려움 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정통번역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법원과 교육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중 최소한 마지막 요인인 통번역사 후보 확보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정통번역의 수요공급 불균형 상황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3. 법정통번역사 분포

법정통번역사의 현황을 미래 교육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 중인 법정통번역사들의 분포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법정통번역사의 분포를 알아야 법정통번역 교육을 설계할 때에 잠재적 교육대상자, 혹은 잠재적 교수자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잠재적 교육대상자, 교수자 파악을 위해 현 통번역사의 분포를 살펴봄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이들을 직업, 연령, 성별, 법정통번역, 혹은 교육유무, 국적, 사용언어 등이다. 이 중, 특히

6) 이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각급 법원은 [...] 통역 경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한다.’ - 제2장 7조), 선발인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개 또는 수개의 외국어 및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 번역인 지정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 - 제2장 6조).

직업, 교육유무, 사용언어는 미래 교육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우선 직업은 이들이 법정통번역 교육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를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교육유무의 경우, 법정통번역 커리큘럼 및 교안작성에 있어 출발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외국어, 법률, 통번역 관련과목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케 하며, 마지막 사용언어의 경우, 법원의 수요와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공급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연령, 성별, 국적 등도 교육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나<sup>7)</sup>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앞서 지적한 세 가지 변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직업분포를 살펴보자. 통계자료가 확보된 221인(서울 164, 창원 38, 부산 19) 법정통번역사 중 자신의 소속기관을 밝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확한 분포통계는 불가능하나 대략의 그림은 그려볼 수 있다. 이들이 밝힌 직업은 관광통역사, 수화통역사, 통번역대학원 출신 회의통역사, 기타 프리랜서 통역사,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통역협회(대학동아리 성격) 회원 대학생, 일반대학원 및 대학 재학생, 대학교강사, 대학교직원, 외국인 노동자상담소 직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직업, 소속기관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특징은 서울을 중심으로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회의통역사, 통역협회(대학동아리 성격)대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이는 서울지역에 통번역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정통번역사의 직업별 차이를 교육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직업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김진아 외 2008 변형)

- 1군: 직업통번역사(통번역대학, 대학원 출신, 관광, 수화통역사, 프리랜서 통역사)
- 2군: 통번역대학원, 통번역대학 재학생, 통역협회 회원 (외국인 유학생 포함)
- 3군: 일반대학원, 일반 대학 재학생 (외국어숙달자)
- 4군: 직장인 1 (한국인 대학교강사, 대학교직원 등)
- 5군: 직장인 2 (외국인)

7) 김진아 외(2008)에서 서울지역 등재 법정통번역사 164명 중 설문에 응한 이는 54명인데, 이들의 성비는 남:녀=11:43으로 약 1:4의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3.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9.6%, 40대가 11.1%였으며, 50대와 60대는 각각 3.7%, 1.9%로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중 1, 2군은 통번역관련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전문직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3, 4, 5군은 통번역 경험은 미비한 외국어숙달자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1, 2, 3군의 경우, 교육에 투자할 시간이 4, 5군에 비해 넉넉한 편이고, 비용면에서는 직장인인 1, 4, 5군이 2, 3군에 비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용언어별 분포를 살펴보자.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법정통번역사 사용언어는 중국어, 영어, 일어, 서어 순이다. 이는 [표1]에서 살펴본 언어수요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어, 영어, 일어 공급이 많은 것은 수요와 일치하나, 몽골어, 베트남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독어, 불어, 서어는 공급이 많다. 이러한 양상은 공급이 수요에 맞추어 설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독어, 불어 공급이 많은 것은 국내 해당어 전공자 수가 많아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등의 특수어 통번역사 수가 적은 이유는 반대로 해당어 전공자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원어 민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공급 불균형 상황은 법정통번역 전문교육을 통해 조절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어	영어	일어	서어	노어	베트남어
47	40	21	14	12	10
독어	몽골어	불어	태국어	수화	이태리어
10	9	6	6	5	4
포르투갈어	인도어	이란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4	4	4	3	3	3
네पाल어	인니/말레이어	터키어	아랍어	폴란드어	스리랑카어
3	3/2	2	2	1	1

(표2) 서울, 부산, 창원 법정통번역사 언어별 분포 (2008년) (단위: 명)

마지막으로 교육유무는 크게 통번역교육의 유무와 법정통번역 교육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본다. 김진아 외(2008)의 설문<sup>8)</sup>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전체 법

8) 대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외대 통대가 주축이 되어 2008년 7-8월 사이 법정통번역사 164명(응답자 54명), 법조인 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정통번역사(서울지역 164명 중 54명) 중, 70.73%는 통번역대학원에서, 5.56%는 대학학부에서 통번역 관련 정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보면, 최소한 서울지역에서 통번역 전문교육을 받은 이의 비율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

(통-4)<sup>9)</sup> 통번역 관련 정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서?  
 통번역대학원 (70.73), 대학학부 (5.56), 교육받은 일이 없다 (22.22)

---

하지만 이들이 대체로 회의통역사를 양성하는 통번역대학원에서 교육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교육은 법정통번역 전문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설문(통-32)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응답자의 72.73%가 법정통번역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법정통번역교육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한 나머지 27.27%도 교육담당기관이 법원(22.22%), 통번역교육기관(7.41%)라고 답해, 이들 교육이 법정통번역 전문교육이라기 보다는 법정통번역 관련 특강(법원), 혹은 법 관련 통번역 과목수강(통번역교육기관)과 같은 일회성 단기교육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통-33) 법정통번역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법원 (22.22), 통번역교육기관 (7.41), 무응답 (70.37)

---

이처럼 이들이 받은 통번역교육이 대체로 회의통역교육이거나 법원에서 법정통번역인에게 배부하는 법정통번역 주의사항 책자, 강의 정도임을 감안할 때, 법정통번역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법정통번역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갖춘 균형 있는 전문교육 설계가 별도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9) (통-4), (법-23)에서 통, 법은 각각 통번역사, 법조인을 변호는 설문의 문항을 지칭한다.

### 3.4 법정통번역사가 기대하는 교육

위에서 법정통번역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한 72.73%를 포함, 법정통번역사의 대다수는 법정통번역 전문교육체계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아래 설문을 보면, 긍정답(매우그렇다, 그렇다)이 통번역사, 법조인 모두 8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

(통-38, 법-23) 법정통번역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통번역사 - 매우그렇다(29.09), 그렇다(50.91), 보통이다(14.55), 그렇지않다(5.45)  
 법조인 - 매우그렇다(4.88), 그렇다(73.17), 보통이다(14.63), 그렇지않다(2.44)

---

이들이 생각하는 구체적 전문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과 관련해서는 통번역사, 법조인 모두 1주일~1개월을 선호하고 있으며(통-26, 법-41), 법정통번역 교육의 주관은 법원과 통번역교육기관이 합동으로 행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통-24, 법-39). 법정통번역 교육 교수자로 법조인, 통번역사 모두 가장 선호하는 이는 실무경험이 있는 법정통역사이고, 법조인의 경우 통번역 교강사를, 통번역사의 경우, 법원행정인을 각각 다음으로 꼽아,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

(통-25, 법-40) 법정통번역 교육에 있어 교육 담당자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통번역사 - 법정통역사 (36.63), 법원행정인 (통역사무관 등) (28.71)  
 법조인 - 법정통역사 (29.58), 통번역 교육기관 교강사 (25.35)

---

또 법정통번역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묻는 질문(법-27, 통-42)에 대해서 법조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형사법을, 통번역사의 경우, 법률용어와 모의재판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국내 현황은 4장의 해외사례와 비교되어 5장의 교육설계에 선별 반영될 것이다.

#### 4. 내적요소와 관련해 본 해외사례

본 장에서는 대규모 이민유입 등으로 한국보다 지역사회통역 및 법정통번역이 일찍 제도화된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 중 국내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본다. 이 장에서 주로 살펴 볼 국가는 대표적 이민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 지역이다.

##### 4.1 교육제도설계 및 자원마련

법정통번역 교육을 제도화함에 있어 첫걸음은 제도 전반을 설계하는 작업과 교육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원의 마련이다. 해외에서 법정통번역이 제도화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법정통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주체(법원, 외국인 커뮤니티, 통번역교육기관, 통번역 직업연맹 등)가 법정통번역 수요에 따라 (중앙, 혹은 지방) 정부에게 제도화를 요구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그 후, 이들은 해당 지역의 통번역기관에게 법정통번역 교육을 위임하거나 법원과 통번역교육기관이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경우<sup>10)</sup>, 통번역사 직업연맹(The Society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및 밴쿠버커뮤니티대학이 법정통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주창하였고, 1979년부터 동대학에서 간소한 법정통번역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무부에 지원을 건의한 결과, 1982년 지원을 확보하고 법정통번역 관련 실무팀(TF)을 구성, 법정통번역 교육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법정통번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들(법조인, 법정통번역사, 정부, 공무원 행정인)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Repa 1981:394), 각계 각층의 관점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었다. 제도화가 수요인, 공급인에서 행정제도권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행정제도권이 행하는 것은 관련법 정비와 재정적 지원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8년 법정통역사법(Court Interpreters Act)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차원으로 나누어 법정통번역을 제도화 하였는데, 특히 주차원에서는 법정통번역 수요가 높은 주(미네소타, 뉴저지, 오레곤, 워싱턴 주 등)끼리 컨소시엄(State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Consortium)을 구성하여 법정통번역

10) Repa (1981, 1991)

제도화를 관장하고 있다. 2003년에는 주법정통역사 지원 프로그램이 1차 통과되어, 연방법무장관이 법정통번역사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1년에 1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길을 열었다(Nicholson 2008:8).

#### 4.2. 교육주체 및 교육형태

여기서 교육주체라 함은 구체적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사임용 및 학생확보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말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어느 국가나 법정통번역의 교육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교육기관임을 볼 수 있다. 법정통번역교육 제도화를 발의한 기관이 법원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즉 대학이나 대학원, 학원임을 볼 수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통번역 교강사가 법대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렇듯 교육기관이 주체가 되는 사례로는 미국의 뉴브릿지 대학(김진아 외 2008:58), 캐나다의 밴쿠버커뮤니티 대학(김진아 외 2008:60),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김진아 외 2008:68)을 들 수 있다. 이 중 밴쿠버커뮤니티 대학에서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법정통번역 교육을 정규과정에 편입했으며, 뉴브릿지 대학과 함부르크 대학은 정규과정 이외 별도의 단기과정을 마련해 법정통번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해외에서 법정통번역 교육은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즉,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준과 자격에 따라 학사과정, 석사과정, 또 정규과정 이외의 단기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4.3 학생 및 교수자

위에서 살펴 본 법정통번역 교육의 형태가 학사과정, 석사과정, 단기과정임을 볼 때, 교육대상자인 학생도 대학생(학사과정), 대학원생(석사과정), 일반인(단기과정)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반인은 다시금 법정통번역사(재교육 차원의 교육)와 직장인, 주부 등의 기타 직업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사과정의 법정통번역 교육은 학생들에게 대입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하는데, 대표적 대학이 미국의 뉴브릿지 대학과 캐나다의 밴쿠버커뮤니티 대학이다. 석사과정 법정통번역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으로는 미국의 찰스턴 대학(김진아 외 2008:57)과

호주의 웨스턴시드니 대학(김진아 외 2008:64)이 있다. 찰스턴 대학의 경우, 4학기에 걸쳐 통번역 기초, 심화과정, 미국 사법체계의 소송절차, 법정통번역 실습 등 폭넓고 심화된 수준의 법정통번역 교육을 실시한다. 단기과정을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으로는 미국의 LA통번역학원(김진아 외 2008:58)과 호주의 국립통번역인증협회(김진아 외 2008:64)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국어와 통번역 기초부터 가르치는 비교적 기초적 과정이고, 후자는 법정통번역사와 일반인 모두를 위한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정통번역사만을 위해 재교육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이 주관하는 단기과정(김진아 외 2008:68-69)이 그것으로 이 과정의 수강자는 법정통번역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이들 과정을 운영하는 교수자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통번역 전공자(1군)가 통번역 이론과 기술을 담당하고, 법대 교강사(2군), 혹은 법조인(판사, 검사)(3군)이 법관련 과목을 맡거나 통번역 교육자와 함께 법정통역 실습을 계획, 실시한다. 또한 법정통번역사(4군)도 직접 교육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상당 부분은 통번역 전공자이어서 이들도 1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캐나다 밴쿠버커뮤니티 대학의 카(Silvana Carr) 교수나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드리젠(Driesen) 교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 4.4 커리큘럼

각 국가, 지역마다 법정통번역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기관의 교육목적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번역 분야와 법 분야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통번역분야는 다시금 기술과 용어로 나뉘어 교육되는 경우도 있다(밴쿠버커뮤니티 대학). 법 분야와 통번역 분야 이외에도 이 두 분야가 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실습, 즉 법정통번역 실습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의 보우밸리 대학(김진아 외 2008:63)과 밴쿠버커뮤니티 대학(김진아 외 2008:61)이다. 이러한 실습은 모의법정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보우밸리 대학), 실제 법정에서 통역경험을 해보는 현장경험 형태로도 진행되며(밴쿠버커뮤니티 대학),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통역 견학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이 이외에도 학생의 외국어 실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별도의 외국어 교육을 병행 실시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을 수강생으로 하는 미국의 LA통번역 학원이 그 예이다. 법정통번역 교육이 지역사회통번역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될 경우, 지역사회관련 교육(이민관련통역, 의학용어, 사회복지 등)이 병행되기도 한다(밴쿠버커뮤니티 대학)

## 5. 구체적 교육설계

본 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각각 분석한 국내현황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법정통번역 교육이 어떻게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 5.1 교육제도설계 및 자원마련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에는 이미 이 법은 법정통번역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통번역 교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용어와 소송법, 소양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재판예규 1040호 제2장 7조)하는 정도에 그쳐 교육관련 내용이 미비하다. 이에 한국외대와 대법원이 합동으로 2008년 법정통번역 제도화를 위한 첫 프로젝트를 출범했는데, 이는 통번역교육기관과 법원이 주체가 되어 법정통번역 제도화를 시행한 해외사례와 비교할 만 하다.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다음 단계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관련법에 반영하여 교육제도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반 위에 법원과 통번역 교육기관이 합동으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실무팀(TF)을 구성하는데, 캐나다의 사례를 보아도 이 실무팀은 행정기관 대표, 법조인, 통번역 관련인, 법 분야, 통번역분야 연구자로 구성되어 모든 분야의 관점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듯 실무팀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될 경우, 교육에 필요한 재정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정통번역 교육은 국가인권실현에 필요한 공공사업이니 만큼 법원과 행정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수강생의 등록금과 기타 기부금 등을 받아 나머지 재정을 충당해 볼 수 있겠다.

## 5.2 교육주체 및 교육형태

먼저 교육주체의 문제를 살펴보면, 3장의 설문에서 법조인, 통번역사 모두 교육설계는 법원과 통번역 교육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이 중 (통번역) 교육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통번역) 교육기관이 교육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법원이 교육을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 교육형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법정통번역 교육수요자이다. 교육설계는 이들의 시간과 비용투자 심리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 살펴본 현 법정통번역사, 즉 잠재적 교육수요자의 구성을 대상으로 생각해 볼 때, 교육형태는 크게 학부, 대학원, 단기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재학생인 2, 3군을 위해서는 그들이 수학 중인 학부와 대학원에 교육과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장인인 1, 4, 5군을 위해서는 별도의 단기과정이 마련해 볼 수 있겠다. 4장에서 보았듯 이러한 법정통번역의 3분화는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먼저 학부교육을 살펴보자. 학부교육에 있어서는 이미 존재하는 각종 통번역대학<sup>11)</sup>의 커리큘럼에 법정통번역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외국어, 모국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외국어우수자는 예외), 교육연한은 해당 지역의 법정통번역 수요에 따라 1학기~2학기로 한다. 학점배점 등은 각 학교의 기존제도에 맞추어 정한다. 또 통번역대학이 없는 지역(강원도, 전라도)에서는 일반 어문학부에 법정통번역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일반 어문학부의 경우, 통번역 학부와는 달리 집중적 언어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수강자의 외국어 수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통번역수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 법정통번역과목은 비슷한 외국어능력을 가진 외국어우수자에 한해 수강을 허가하며, 교육연한은 외국어 집중훈련기간을 포함해 2학기 정도로 한다.

다음으로 대학원을 살펴보자. 2년 과정인 통번역대학원에서 수요가 불확실

11) 2009년 현재 국내에 별도의 통번역 학부를 두고 있는 대학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영어), 한국외대 용인캠퍼스(특수어 포함 10개어), 대구외대, 경북외대 3 곳이다. 그 밖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동국대, 경희대, 한동대 등이 통번역 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하고 있다.

한 법정통번역 교육에 한 학기 모두를 할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법정통번역 교육은 회의통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 통번역대학원 교육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학원생들이 법정통번역을 맡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부족하다. 따라서 통번역대학원에서 법정통번역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비교적 법정통번역 수요가 많은 언어에 한해 1~2과목 정도를 배정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중요도나 규모가 높은 국제재판을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여 기타 법정통번역 교육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한편, 관련 수요도 낮고 통번역대학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강원도, 전라도)의 경우<sup>12)</sup>에서는 일반대학원 어문학부에서 법정통번역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도 앞서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강자들의 외국어 수준이 교육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수준이 유사한 외국어우수자에 한해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며, 교육연한은 외국어 집중훈련기간을 포함, 2~3과목으로 한다.

세 번째, 단기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기과정의 목표대상자가 다양한 만큼 (1군, 4군, 5군), 단기과정도 이들의 사정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정된 근무시간을 가진 고용인이고 일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운용이 가능한 프리랜서이다 (설문시 인적사항 조사의 결과). 따라서 단기과정도 일반 직장인이 수강할 수 있는 저녁반/주말반과 프리랜서를 위한 단기속성과정 두 가지로 분류해 교안을 작성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정된 근무시간을 가진 **직장인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예를 참조하여 저녁시간과 주말을 이용한다. 저녁보다는 주말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한다. 저녁반은 1주일 2회로 1회마다 2시간을 교육하며, 주말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4시간 정도를 교육한다. 총 교육기간은 독일과 스위스를 참조하여 6개월(192 시간) ~ 10개월(320 시간)정도로 하는데 정확한 교육기간은 그 지역, 시기의 법정통번역 수요와 수강생들의 언어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2) 2009년 현재, 국내의 통번역대학원은 서울과 경상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는 한국외대, 이화여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성균관대, 동국대가 통번역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경상지역에서는 부산외대, 한동대, 계명대 통번역대학원이 있다. 그 밖에 충청지역에는 선문대가,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가 석사과정 고등 통번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교육과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일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나 학생을 위한 교육형태로 특히 대학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면 학생들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을 듯 하다. 수강자가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루에 3시간씩을 강의 하도록 하고(토요일, 일요일 제외), 교육기간은 3개월(180시간) ~ 5개월(300시간) 정도로 한다. 여기에서도 정확한 교육기간은 지역, 시기에 따른 수요와 수강생의 언어능력에 따라 조정한다.

### 5.3 학생 및 교수자

#### 5.3.1 학생

먼저 **학부교육**을 살펴보자. 대학 학부생의 경우에 법정통번역 학기를 수강할 수 있으려면 이미 상당한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수강생을 통번역대학 3학년 재학, 혹은 그에 준하는 어학, 통번역 능력을 갖춘 3학년 이하 재학생(즉, 외국어우수자)으로 제한한다. 수강자격 시험은 통번역대학의 경우, 입학시험과 3학년 진급시험 이외에 별도의 시험이 없다. 일반 대학 어문학부의 경우에는 교사가 재량에 따라 수강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어학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충분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수강생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어 집중훈련 기간을 갖는다(1학기 정도). 기타 언어별 교육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자격	전공외국어 (사실상 모든 언어전공자가 수강가능)
통번역대학이 있는 지역	통번역학부 입학 시험 및 3학년 진 학시험 (혹은 3학년 이상 의 어학능력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등 수요가 높은 언어는 상시 개설</li> <li>• 독어, 불어, 서어 등은 수강자가 있을 경우 개설 (법정통번역 공통과목은 언어전공과 무관하게 수강가능)</li> <li>• 특수어는 특수어 학과에서 개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특수어 통번역학과)</li> <li>• 특수어 통번역교육은 외국인에게도 개방</li> </ul>
통번역대학이 없는 지역	수강생들의 언어 능력은 교사재량에 따라 판단 (별도의 언어능력 시험을 치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등 수요가 높은 언어는 상시 개설</li> <li>• 독어, 불어, 서어 등은 수강자가 있을 경우 개설 (법정통번역 공통과목은 언어전공과 무관하게 수강가능)</li> <li>• 특수어는 특수어 학과에서 개설 (한국외대, 부산외대 특수어 어문학과)</li> <li>• 특수어 통번역 교육은 외국인에게도 개방</li> </ul>

[표3] 법정통번역 교육의 학생 1 (학부교육)

한편, 대학원의 경우, 수강자격을 통번역대학원 2학년 재학, 혹은 그에 준하는 어학, 통번역 능력을 갖춘 1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법정통번역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데에는 통번역대학원 입학시험 이외에 별도의 수강자격 시험은 없다. 전공외국어별 구분을 보면 영어, 중국어, 일어와 같이 수요가 높은 언어 전공자에게는 법정통번역 교육을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독어, 불어, 서어, 노어, 아랍어 등의 경우, 공통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물론, 수강자수가 많다거나 별도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들 언어에 대해서도 관련과목을 개설한다. 통번역대학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법정통번역 과목의 수강자격은 언어자격시험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언어의 수준은 교사의 재량에 따른다.

	자격	전공외국어 (사실상 모든 언어전공자가 수강가능)
통번역대학원이 있는 지역	통번역대학원 입학시험 및 2학년 진학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등 수요가 높은 언어는 상시 개설</li> <li>• 독어, 불어, 서어 등은 수강자가 있을 경우 개설 (법정통번역 공통과목은 언어전공과 무관하게 수강가능)</li> <li>• 특수어는 고급 수요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개설</li> <li>• 특수어 통번역 교육은 외국인에게도 개방</li> </ul>
통번역대학원이 없는 지역	수강생들의 언어능력은 교사재량에 따라 판단 (별도의 언어능력 시험을 치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등 수요가 높은 언어는 상시 개설</li> <li>• 독어, 불어, 서어 등은 수강자가 있을 경우 개설 (법정통번역 공통과목은 언어전공과 무관하게 수강가능)</li> <li>• 특수어는 특수어 학과가 있을 경우, 학과 내 개설</li> <li>• 특수어 통번역 교육은 외국인에게도 개방</li> </ul>

(표4) 법정통번역 교육의 학생 2 (대학원 교육)

셋째, 단기과정은 저녁반/주말반이나 속성과정 모두의 수강생에 대해 동등한 자격을 요구한다. 외국어우수자 중에는 대학생, 외국 장기체류자나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도 다수 포함될 것을 감안해 고졸 이상의 학력만을 요구한다. 수강자격 시험은 외국어와 모국어 시험에 대해 필기, 구두시험을 모두 실시하도록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는 한국어가 된다. 즉, 외국인은 한국어와 모국어 시험을 치른다. 외국어/모국어 시험을 필기/구두 모두에 거쳐 실시함으로써 수강자가 통역과 번역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충

분히 갖추었는지를 판단한다. 수강생들의 전공외국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 여부는 앞의 경우처럼 법정통번역 수요와 수강생들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학력	수강자격시험	전공외국어 (사실상 모든 언어전공자가 수강가능)
저녁반/주말반 단기속성과정 모두에 해당	고졸 이상의 학력	외국어 시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시험), 모국어 시험 필기/구두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등 수요가 높은 언어는 상시 개설</li> <li>• 독어, 불어, 서어 등은 수강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개설</li> <li>• 특수어도 수강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개설</li> <li>- 단, 수요가 낮은 언어나 특수어도 전공어와 무관한 공통과목은 수강가능</li> <li>- 영어 전공수업의 청강도 고려</li> </ul>

(표 5) 법정통번역 교육의 학생 3 (단기과정)

### 5.3.2 교수자

법정통번역 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교사의 기본조건은 앞서 본 세 가지 교육형태와는 무관하게 정해져 있다 할 수 있다. 법정통번역 교육에 있어 법정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과 외국어 능력, 통번역 기술, 법정통번역사로서의 윤리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는 각계 분야의 전문가인 법조인과 통번역 교육자, 또 법정통번역사이기 때문이다. 교육실체에 있어 이들 세 교육자는 각기 자신의 전공분야 교육을 담당하며 모의법정통역에 있어서는 함께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 그 밖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한해 통번역대 교강사나 원어민 강사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법조인, 법대 교강사 - 법률 전반 및 소송법, 재판과정 교육을 담당한다.
- 통번역대 교강사 - 외국어 및 통역, 번역교육을 담당한다. 통번역의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고, 수강자의 외국어 실력이 불충분할 경우 외국어 교육도 담당한다.
- 법정통번역사 - 법정통번역 실체를 가르치고 법정통역사 윤리교육도 담당한다.
- 원어민 - 수강자들의 전공외국어 실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다. 경우에 따라 모의법정통역에 투입될 수도 있다.
- 법조인 + 통번역 교육자 + 법정통역사 - 함께 협력하여 모의법정통역을 준비한다. 법조인은 재판과정에 대해, 통번역 교육자는 효과적 통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조언한다.

### 5.4 커리큘럼

구체적인 커리큘럼 작성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 본 학생, 교수자의 조건, 교육연한 등의 내용을 전제로 살펴본다.

먼저 학부교육을 살펴보자. 통번역대학 3학년의 경우, 통역입문, 번역입문 및 외국어숙달 과목은 별도로 수강한다는 전제 하에 법정통번역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통번역대학이 없어 일반 어문학과에서 법정통번역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여기에 통번역입문과 외국어숙달과목을 추가한다. 구체적인 교안작성에 있어 실제 학부에서 통번역 교육을 하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였는데, 이들 대학은 지역사회통역사, 혹은 법정통번역사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교안이라, 법정통번역교육을 기존 학부과정에 통합실시하려는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점도 있다. 따라서 이들 사례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만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과목들은 통합, 축소하였다.

과목	과목설명
법률입문	한국 및 전공국가 사법체계, 형사 및 민사소송법, 외국인법, 법률용어 해설
법률번역	법문, 판결문, 기타 법률자료 번역
법정통역	순차통역, 문장구역, 위스퍼링 / 법정통역사 윤리, 역할
모의재판	실제 사건사례 (역할극)
통번역입문 (어문학부에 한해)	통역, 번역의 본질과 기술
외국어숙달 (어문학부에 한해)	전공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 강화

[표 6] 법정통번역 교육의 커리큘럼 1 (학부교육)

한편, 대학원의 경우, 대상자인 통번역대학원 2학년이 통역입문, 번역입문 및 외국어숙달 과목은 이미 수강했다는 전제 하에 법정통번역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대학원교육에 있어서도 일반대학원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경우, 통번역입문 수업 및 외국어숙달 과목을 별도로 첨가한다.

과목	과목설명
법률번역	재판과정, 법률용어 / 법문, 판결문, 기타 법률자료 번역
법정통역	법정통역의 실제 / 법정통역사 윤리, 역할
모의재판	실제 사건사례 (역할극) - 사정의 여의치 않으면 생략
통번역입문 (일반대학원)	통역, 번역의 본질과 기술
외국어숙달 (일반대학원)	전공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 강화

(표 7) 법정통번역 교육의 커리큘럼 2 (대학원 교육)

단기과정의 교육내용은 법조인과 법정통역사 설문결과 및 해외 법정통번역 교안을 참조했다. 설문결과에서는 법률용어와 모의재판 교육을 위한 통역사의 대답과 각종 소송법, 특히 형사소송법의 교육을 강조했던 법조인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해외의 사례에서는 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과 스위스의 취리히 대학의 사례를 참조하였다. 이 중, 영어, 중국어 등 수요가 높은 언어에 대해서는 법정통번역의 모든 과목을 세분화하여 커리큘럼에 반영한다.

전 외국어 공통과목	
통번역입문	통번역 이론과 기술 (메시지 파악기술, 발화기술 등), 노트테이킹
법률입문	한국 및 전공어 국가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외국인법
법률용어 I	각종 법률용어 해설
전공 외국어별 수업	
외국어/모국어 숙달	문법점검 / 다양한 분야의 외국어/모국어 어휘, 표현
통역실습	순차통역, 위스퍼링, 문장구역
번역실습	법문, 판결문, 기타 법률자료 번역
법률용어 II	각 법률용어에 대해 한국어 및 전공어 대응어를 익힌다.
법정통번역 실습 (전공외국어별 수업)	
법정통역입문	법정통역에서 주의할 점, 법정통역사 윤리, 역할
모의재판	실제 사건사례 (역할극)

(표 8) 법정통번역 교육의 커리큘럼 3 (단기과정)

독어, 불어 등 법정통번역 수요가 비교적 낮은 언어의 경우, 커리큘럼의 기본 틀은 위의 예를 따르되 수강생들의 시간과 비용투자 동기유발도 낮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커리큘럼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운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법률입문 수업 및 법률용어 수업을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법정통역 입문 수업과 통번역입문 수업을 통합해 법정통번역입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혹은 모의재판을 생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모의재판 교육의 효용성을 생각해 볼 때 사정의 여의치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동남아어 등 **특수어**의 경우도 커리큘럼의 기본 틀은 위의 예를 따른다. 한국인이 특수어를 배우려는 동기유발이 낮을 것을 감안하여 이미 해당어를 전공한 전공자나 해당어 원어민 수강을 권장한다. 이들, 특히 원어민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할 것을 감안하여 되도록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한국어 숙달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수어 커리큘럼도 학생들의 시간적,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운용 한다. 외국인을 통역사로 양성하여 한국 내 재판에 투여할 경우, 법정통역사 윤리문제를 보다 강조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교안에서 개설 언어나 교육내용은 지역 수요에 맞게 조절한다.

## 6. 나가며

특정분야의 교육을 설계한다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다. 이를 지면관계로 필요한 만큼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위에서 조명한 커리큘럼이나 학생, 교수자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교육설계에는 구체적 교안작성, 입학시험 및 수업평가방식, 교수법 개발(모의법정통역 등에 대해), 교재개발과 법정통번역 사용자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사안은 법정통번역 교육 제도화가 이미 진행된 미국, 유럽을 보아도 법정통번역교육의 구체적 설계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임을 볼 수 있다. 이 중 교재에 대해서는 해외 교재인 Edwards(1995), Mikkelson&Willis(1993), Mikkelson(2000)을 각각 참조해볼 만하다. 이들은 각각 법교육/통번역교육을 이분화해서 소개하거나, 법정통번역사가 되는 길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등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교해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 사용자교육에 대해서는 법정통번역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Corsellis(1997), Tebble(1998)을 참조해볼 만하다.

## 참고문헌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8. 『국내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방향 모색』. 법원행정처.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9. 「전문사법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대책」, 『통번역학연구』 12:2.
- 정혜연. 2008. 「통번역분야변화에 따른 학부통번역교육의 새방향」, 『외국어교육』 15:1.
- Corsellis, A. 1997. "Training Needs of Public Personel Working with Interpreters", *The Critical Link. Silvana Carr, Roda Roberts,. Aideen Dufour, Dini Steyn (eds).* 77-8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Edwards, A. B. 1995. *The Practic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Freihoff, R. 1993. "berlegungen zur Curriculumplanung und -entwicklung im Bereich der Translation", *TextConText* 8, 197 - 224.
- Hertog, E. 2008.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the EU: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through Language",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43-54. HUFS.
- Mikkelson, H. & Willis, J. 1993. *The Interpreter's Edge (Generic Edition): Practical Exercises in Court Interpreting.* USA:ACEBO.
- Mikkelson, H. 2000. *Introduction to Court Interpreting.* UK: St.Jerome.
- Repa, J. 1981. "A Training Program for Court Interpreters", *Meta* 26:4, 394-396.
- Repa, J. 1991.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Court Interpret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Meta* 36:4, 595-605.
- Tebble, H. 1998. *Medical Interpreting -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your patients.* Geelong/Melbourne: Language Australia/Deakin University.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Abstract]

### **Court Interpreting/Translation Education**

Chung, Hye-yeo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e process of designing an education system often requires great endeavor; setting goals, defining variables, conducting surveys to diagnose the status quo and, last but not least, fine-tuning the details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goals and circumstances. This paper on court interpreter education in Korea follows a similar process. It first attempts to clearly define the goals of court interpreter education, and to figure out which variables are to be considered to forestall unexpected factors adversely affecting the plan. The external (supply and demand of court interpreter market, etc.) as well as internal (age, languages of the court interpreters etc.) variables construct the backbone of this paper. With regard to the external variables, a surve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court interpreter market situation in Korea, while the education models of the U.S., Canada, Australia and Europe are examined in relation to internal variables. The final chapter presents a design of a court education system suitable to Korea with relevant details elaborated.

▶ Key Words: court interpreting education, status quo in Korea and abroad, curriculum of court interpreting

정혜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johanna2000@hanmail.net

관심분야: 인지학, 통번역학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26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